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2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6월 14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봉사과장 남상수)

□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와 민원서류의 발급 등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규정과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조정함.(안 제6조제1항)

-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.(안 제7조제1항제2호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상담위원이나 근무자의 연임제한을 없애는 이유가 위촉할 대상이나 신청자가 없어서인지?	○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하는 것임.
○ 연임제한을 두지 않으면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참여 기회가 적어질 것으로 보는데?	○ 상담위원은 행정동우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23호
의결 년월일	2006. 6. 16 (제127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6. 8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와 민원서류의 발급 등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규정과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조정함.
(안 제6조제1항)
-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.(안 제7조제1항제2호)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오전 : 07:00 ~ 09:00

나. 오후 : 18:00 ~ 20:00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시민봉사과
입	담당과장	남 상 수
	담당팀장	이 강 윤
자	담당자	유성준(320-213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 실설치운영조례</p> <p>제5조(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)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 담 위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민봉사실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 이 위촉한다. 1.~4. (생 략) ② (생 략)</p> <p>제6조(임기) ①상담위원 및 시민봉 사실 근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u> ②(생 략)</p> <p>제7조(근무시간) ①상담위원 및 시 민봉사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 략)</p>	<p>부천시 행정정보종합센터 및 시민 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</p> <p>제5조(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) ①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1.~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임기) ①----- ----- -----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근무시간) ①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시민봉사실 근무자</p> <p>가. 오전 : 07:00 ~ 08:30</p> <p>나. 오후 : 18:00 ~ 20:00(동절 기 : 17:00 ~ 19:00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해촉)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 실 근무자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 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~4.(생략)</p>	<p>2. -----</p> <p>가. 오전 : 07:00 ~ 09:00</p> <p>나. 오후 : 18:00 ~ 20:00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해촉)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